

나. 미납세반출 후 판매·반출 시 신고·납부 특례(안 제10조의4 신설)

납세편의를 위하여 미납세반출 시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입자를 대신하여 반출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안 제10조의5 신설)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혼합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한 특례를 둬.

라.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설정(안 제18조제1항)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가격에 따라 면세금액이 크게 달라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면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마.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개선(안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정해진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유예(안 법률 제9259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 법률 제9909호 부칙 제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 **법률 제11121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중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환급”을 “환급 또는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5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6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로, “결정 또는 판결”을 “결정·판결 또는 경정청구”로, “경정결정(更正決定)”을 “경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의3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6.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를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로 한다.

제2장제4절제2관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부족”을 각각 “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을 “보정신청을 한 날”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전단 중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248조에 따라”를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 본문 중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6항”을 “제10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 :”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으로, “수출하였을 때”를 “수출하였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인 경우 :”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반입하였을 때”를 “반입하였을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려는”을 “양도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을 “양도한”으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7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8조의3제3항”을 “제38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제120조제1항 단서 중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로, “제39조 및 제40조”를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로 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외국 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 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내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2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를”을 “화주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제2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2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 요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54조의2제4항 중 “택송품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택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택송품의”로 한다.

제265조 중 “명령”을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6조제1항 중 “문서화되거나 전산화된 장부·서류 등 관계 자료를”을 “질문하거나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로 한다.

제276조제2항제2호 중 “제12조”를 “제12조(제27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109조제1항”을 “제109조제1항(제277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222조제1항”을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4조제5항”을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78조제2항제1호 및 제2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7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5조제1항(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제136조제1항”을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1조제1호·제3호, 제142조제1항, 제144조”를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35조제2항(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2.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제277조제1항제1호 중 “제139조, 제143조제1항”을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104조제5항”을 “제10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322조제5항 전단 중 “대행할 자”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를 “대행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인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대행기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328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제178조제2항에 따른”을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6호) 중 “취소”를 “취소 및 사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로 한다.

2.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8. 제224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9. 제255조의2제5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별표 관세율표 제2부 제11류 번호란의 1101.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01	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 밀가루	3
		2. 메슬린 가루	5

별표 관세율표 제2부 제12류 번호란의 1207.20란을 삭제하고, 1207.40란 앞에 1207.2란, 1207.21란 및 1207.2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7	2	면실	
1207	21	종자	3
1207	29	기타	
		1. 사료용	2
		2. 기타	3

별표 관세율표 제3부 제15류 번호란의 1507란, 1507.10란, 1507.90란, 1509란, 1509.10란, 1509.90란, 1510.00란, 1512란, 1512.1란, 1512.11란, 1512.19란, 1512.2란, 1512.21란, 1512.29란, 1514란, 1514.1란, 1514.11란, 1514.19란, 1514.9란, 1514.91란, 1514.99란, 1515란, 1515.1란, 1515.11란, 1515.19란, 1515.2란, 1515.21란, 1515.29란, 1515.30란, 1515.90란 및 1518.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이 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	10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5
1507	90	기타	
		1. 정제유	5
		2. 기타	5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	10	버어진	5
1509	90	기타	5
1510	0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이들의 유(油)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5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	11	조유	
		1. 해바라기씨유	5
		2. 잇꽃유	5
1512	19	기타	
		1. 정제유	
		가. 해바라기씨유	5
		나. 잇꽃유	5
		2. 기타	
		가. 해바라기씨유	5
		나. 잇꽃유	5
1512	2	면실유와 그 분획물	
1512	21	조유(고시폴을 제거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5
1512	29	기타	
		1. 정제유	5
		2. 기타	5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4	1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1514	11	조유	5
1514	19	기타	5
1514	9	기타	
1514	91	조유	
		1.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5
		2. 겨자유	5
1514	99	기타	
		1. 정제유	
		가.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5
		나. 겨자유	5
		2. 기타	5

1515		기타 비취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	1	아마인유와 그 분획물	
1515	11	조유	5
1515	19	기타	5
1515	2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	21	조유	5
1515	29	기타	5
1515	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5
1515	90	기타	
		1.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2. 기타	
		가. 미강유와 그 분획물	5
		나. 동백유와 그 분획물	8
		다. 호호바유와 그 분획물	8
		라. 동유와 그 분획물	8
		마. 기타	5
1518	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1. 탈수피마자유	8
		2. 에폭시화한 대두유	8
		3. 기타	
		가. 사료용	5
		나. 기타	8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17류 번호란의 1701란, 1701.9란, 1701.91란 및 1701.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의 것에 한정한다)	
1701	9	기타	
1701	91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30
1701	99	기타	30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19류 번호란의 1902란, 1902.1란, 1902.11란, 1902.19란, 1902.20란, 1902.30란, 1902.40란 및 1905.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肉) 또는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 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1902	1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1902	11	조란을 넣은 것	5
1902	19	기타	
		1. 국수	5
		2. 당면	8
		3. 냉면	5
		4. 기타	5
1902	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5
1902	30	기타의 파스타	5
1902	40	쿠우스쿠우스	5
1905	90	기타	
		1. 베이커리 제품	
		가.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5
		나. 기타	8
		2. 기타	8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23류 번호란의 2303.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03	30	양조 또는 증류 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1. 사료용	3
		2. 기타	5

별표 관세율표 제5부 제27류 번호란의 2710.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2710.11란을 삭제하며, 2710.19란 앞에 2710.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710.19란, 2710.9란, 2710.91란 및 2710.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710	1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오일은 제외한다)	
2710	12	경질석유 및 조제품	
		1. 자동차 휘발유	3

2710	19	2. 항공 휘발유	3
		3. 프로필렌테트라머	5
		4. 나프타	무세
		5. 엔·지·엘(NGL)	무세
		6. 기타	5
		기타	
		1. 기타 휘발유 및 그 조제품	
		가. 제트 연료유	5
		나. 기타	5
		2. 등유 및 그 조제품	
		가. 등유	3
		나. 제트 연료유	3
		다. 노르말 파라핀	5
		라. 기타	5
		3. 경유	3
		4. 중유	
		가.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3
		나. 중유(방카 비유)	3
		다. 방카 씨유	3
라. 기타	5		
5. 조유 및 윤활유기유	7		
6. 신전유	8		
7. 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7		
8. 그리스	8		
9. 기타	8		
2710	9	웨이스트 오일	
2710	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1. 휘발유 및 그 조제품의 것	
		가. 자동차휘발유·항공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3
		나. 나프타 및 엔·지·엘의 것	무세
		다. 기타	5
		2. 등유 및 그 조제품의 것	
		가. 등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3
		나. 기타	5
		3. 경유의 것	3
		4. 중유의 것	
		가. 경질중유(방카 에이유)·중유(방카 비유) 및 방카 씨유의 것	3
		나. 기타	5
		5. 조유·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기유의 것	7
		6. 기타	8

2710	99	기타 1. 휘발유 및 그 조제품의 것 가. 자동차휘발유·항공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나. 나프타 및 엔·지·엘의 것 다. 기타 2. 등유 및 그 조제품의 것 가. 등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나. 기타 3. 경유의 것 4. 중유의 것 가. 경질중유(방카 에이유)·중유(방카 비유) 및 방카 씨유의 것 나. 기타 5. 조유·윤향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향유기유의 것 6. 기타	3 무세 5 3 5 3 3 5 7 8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3류 번호란의 3302란, 3302.10란, 3305란, 3305.10란, 3305.20란, 3305.30란 및 3305.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302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해당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3302	10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업용의 것 1. 식품공업용의 것 2. 음료공업용의 것 가. 음료제조용의 조제품 (1)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2) 기타 나. 기타	5 30 8 5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	10	샴푸	5
3305	20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5
3305	30	헤어 래커	5
3305	90	기타	5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4류 번호란의 3402란, 3402.20란 및 3402.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 인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20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 1. 조제세제 2. 기타	5 8
3402	90	기타 1. 조제세제 2. 기타	5 8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8류 번호란의 3823.7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823	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1. 세틸 알코올	5
		2. 스테아릴 알코올	5
		3. 올레일 알코올	5
		4. 라우릴 알코올	3
		5. 기타	
		가.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2
		나. 기타	5

별표 관세율표 제7부 제40류 번호란의 4011란, 4011.10란, 4011.20란, 4011.40란, 4011.50란, 4011.6란, 4011.61란, 4011.62란, 4011.63란, 4011.69란, 4011.9란, 4011.92란, 4011.93란, 4011.94란 및 4011.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정한다)	
4011	1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5
4011	20	버스용 및 화물차용의 것	5
4011	40	모터싸이클용의 것	5
4011	50	자전거용의 것	5
4011	6	기타("헤링본" 또는 이와 유사한 트레드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	
4011	61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5
4011	62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5
4011	63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4011	69	기타	5
4011	9	기타	
4011	92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 및 기계의 것	5
4011	93	건설용 또는 산업용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5
4011	94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4011	99	기타	5

별표 관세율표 제8부 제41류 번호란의 4105란, 4105.10란, 4105.30란, 4106란, 4106.2란, 4106.21란 및 4106.2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정하고, 스플릿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	1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3
4105	3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3

4106		기타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정하고, 스플릿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6	2	산양의 것	
4106	2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3
4106	2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3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61류 번호란의 6111란, 6111.20란, 6111.30란 및 6111.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111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6111	20	면제의 것	8
6111	30	합성섬유제의 것	8
6111	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62류 번호란의 6209란, 6209.20란, 6209.30란 및 6209.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209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6209	20	면제의 것	8
6209	30	합성섬유제의 것	8
6209	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번호란의 8482.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482	10	볼베어링	
		1.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2. 기타	8

별표 관세율표 제17부 제87류 번호란의 8715.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715	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5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항, 제38조의3제3항, 제42조제1항,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8조제1항, 제146조, 제276조제2항제2호(환승전용내항기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7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4,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제38조의3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조사 결정에 의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 전 통지에 대한 조기 경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 전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심판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7항 및 제1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문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소·정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를 신용카드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고, 할당관세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여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조사를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물가 안정을 위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 합리화(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한편,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내에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안 제30조제3항)

납세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보정제도 개선(안 제38조의2)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한 후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그에 대한 가산세 면제와 함께 세액심사도 면제하던 것에서, 보정 이후에도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와 국세 간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신설(안 제38조의4 신설)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할당관세의 추진실적 및 결과 보고(안 제71조제4항 신설)

할당관세의 연간 추진 실적 및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안 제110조제2항)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대상을 관세범칙조사, 방문조사 뿐 아니라 서면조사까지 확대함.

사. 관세조사의 원칙 및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안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 신설)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과 수출입관련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통합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관세조사를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세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아.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 등(안 제 111조)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며, 관세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추가함.

자. 유사·중복 위원회의 정비(안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제3항)

관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 심사기관으로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폐합함.

차. 청문대상 불이익 처분의 범위 확대(안 제328조)

불이익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취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취소 등의 처분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

카. 물가안정 등을 위한 기본세율의 인하(안 별표)

휘발유 등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의 제품과 밀가루, 유아용 의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의 기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외 경쟁 촉진을 통한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